



의안번호	제12호
------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2. 7.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의안 번호	제12호
----------	------

제출연월일 : 2022. 2. 7.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21.6.10.)됨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공동대응 및 고대 백제역사문화 선양과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상생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필요성

- 한성-웅진-사비 시대를 아우르는 대통(大通)백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안 및 공감대 형성

3. 주요내용

- 가. (안 제1~3조)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 나. (안 제4~7조) 협의회의 구성, 임원의 구성, 선출, 임무
- 다. (안 제8~12조) 협의안 제출, 회의, 의결정족수,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의 청취 등
- 라. (안 제13~16조) 실무협의회, 전문·자문위원,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 마. (안 제17~23조) 경비부담, 회계운영, 수당 등, 회계보고 및 결산, 사무인계인수, 규약개정, 운영세칙

4.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현황(20개)

총계	광역(3)	기초(17)
2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송파구 (인천광역시)연수구 (대전광역시)대덕구, 서구 (경기도)광주시, 하남시 (충청남도)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익산시

5. 보고사항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6. 제안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 붙임 1.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다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 “백제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로 변경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국·내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백제역사문화권 홍보 및 문화관광, 공동 브랜드와 문화상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백제역사문화권 기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과

백제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임원은 상임고문,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상임고문은 광역단체장으로 한다.

③ 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1인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2인으로 한다.

⑤ 감사는 기초단체장 중 2인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지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상임고문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회원단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며 정부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에 참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협의안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3월, 9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토의와 표결권을 갖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무협의회, 전문·자문위원, 사무국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고,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전문·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전문·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백제역사문화권 관련 조사 연구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사업계획 수립
3.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18조(회계운영) ① 일반회계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특별회계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연구재단 설립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3.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제19조(수당 등) ①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자문위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